

의안번호	2217735
의 퇴 인	최기상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B169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u>관리비</u>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2항 신설 (수급권자의 범위)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제2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7조의2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와 <u>관리비</u> 를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의2 신설 (관리비의 지급)	제2조제1호의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제2항 신설 (수급권자의 범위)	
3	안 제7조의2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4	안 제8조의2 신설 (관리비의 지급)	

2. 상세 사유

- (안 제5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완화하여, 아동양육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을 초과하고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가 새롭게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선정기준이 완화에 따라 신규로 편입될 아동양육가구의 규모는 매년 결정되는 기존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로 달라지고 있어 현시점에 지원대상이 불확정적이고, 지급되는 단가는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가구별로 차등 산정되므로 신규 편입가구에 실제 지급될 급여단가도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7조의2)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임차료를 분리 지급받는 경우 관리비도 함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는 임차료만 분리 지급되던 청년가구원에게 관리비까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청년가구원에 대한 관리비 분리지급의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관리비 자체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도 안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기간 및 지급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8조의2 신설) 개정안은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지급 항목으로 신설하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 및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편입되는 수급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관리비 급여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관리비 지급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이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는 관리비를 지급받게 될 대상자 수, 가구당 지급액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388-3735	jangwy93@nabo.go.kr